

3-1. 자가격리자 운영방안

- ▶ 근거 : 「감염병예방법」 제42조제2항·제7항, 제47조제3호, 제49조제1항제14호
「감염병예방법 시행령」 제23조 및 별표2
- ▶ 접촉자는 역학조사에서 확정된 사람 외에도 신고나 접촉자 모니터링 등을 통해 추가될 수 있음
- ▶ 자가격리자가 아닌 해외입국자 시설격리는 「입국자 임시생활시설(검사시설) 관리·운영 지침」 참조

가. 자가격리 대상자 ⇒ 감염병의심자

- 확진자(재택치료 환자에 한함)
 - * 격리해제 후 재검출 또는 단순재검출 사례에 해당하는 경우는 격리대상이 아니므로 격리통지 및 격리통지서 발급 불가
-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인 감염병의심자가 자가격리 대상임
 - ① 감염병환자, 감염병의사환자 및 병원체보유자(이하 “감염병환자등”)와 접촉하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(이하 “접촉자”)
 - ▶ 확진자가 감염취약시설 3종[① 요양병원·장기요양기관(노인요양시설,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, 주야간보호기관, 단기보호기관), ② 정신건강시설, ③ 장애인시설] 구성원인 경우 해당 시설 내 접촉자
 - ② 「검역법」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검역관리지역 또는 중점검역관리지역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사람으로서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
 - ③ 감염병병원체 등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

나. 격리통지 방법

- 격리통지는 입원·격리통지서(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)에 의하나, 신속한 통지를 위해 「행정절차법」제22조 예외규정에 근거해 문자, SNS 등의 방법으로 통지
 - * 사진, PDF 형태의 법정통지서는 첨부 생략 가능
 - 단, 격리자가 요청하는 경우 문서 형태의 법정 격리통지서 발급
 - * 행정절차법(제24조)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(중략) 경우에는 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. 이 경우 당사자가 요청하면 지체없이 처분에 관한 문서를 주어야한다.
 - 문자 등 방법으로 통지 시 통지의 효력을 위해 격리대상자 성명, 격리기간, 격리장소, 검사의무, 통지기관, 담당자연락처 등 필수 기재
 - 격리통지 시 격리수칙 등 안내문을 함께 전송
- 지자체 여건이 허락할 경우, 문자 격리통지 외 법정통지서 발급(사후발급 포함) 권고
 - * (예) 코로나 행정지원센터를 통한 일괄 사후발급, 정보시스템을 통한 발급 등
- 해외입국자에 대한 격리통지는 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발급(질병관리청장 위임)

※ 격리통보 문자 예시 (☞ 지자체에 따라 일부 변경 사용 가능)

▶ 확진자의 경우 [경우코로나19정보관리시스템의 문자통지 활용](#)

1. 귀하와 귀하의 동거인은 감염병예방법 제43조 등에 따라 격리 또는 수동감시됨을 통지합니다.
 - 격리대상자 : 확진자 ○○○, 동거인 ○○○, 동거인 ○○○
 - 수동감시대상자 : 동거인 ○○○, 동거인 ○○○
 - 격리기간 : '22. ○.○. ~ ○.○. 24:00(동거인은 음성인 확인된 경우에 한함)
 - 격리장소 : 자가
 - 동거인 신속항원검사: 1차(등지 후 3일 이내), 2차(수동감시 6~7일차)
2. 격리수칙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
3. 첨부한 격리통지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☞ 확진자 및 동거인 격리통지서 사진촬영 첨부
4. 통지기관: ○○시 보건소장 (담당자 ○○○-○○○-○○○○)

▶ 확진자가 감염취약시설 3종 구성원인 경우 해당 시설 접촉자의 경우

1. 귀하는 감염병예방법 제43조 등에 따라 격리됨을 통지합니다.
 - 격리대상자 : ○○○
 - 격리기간 : '22. ○.○. ~ ○. 24:00(음성 확인된 경우에 한함)
 - 격리장소 : 자가
 - PCR 검사 : 2회(접촉자 분류 즉시 1회, 6~7일차 1회)
2. 격리수칙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
3. 첨부한 안내문의 격리수칙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.
4. 통지기관: ○○시 보건소장 (담당자 ○○○-○○○-○○○○)
☞ '자가격리자생활수칙 안내문' 등 첨부 또는 링크

다. 자가격리 방법

▶ 장애인 : 「장애인 대상 감염병 대응 매뉴얼」 (보건복지부) 적용

○ (격리 방법) 자가격리 기간 동안 샤워실과 화장실이 구비된 독립된 공간에 혼자 생활

- 자가격리 중인 사람은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하거나 이동하지 않도록 해야 함
 - * 격리수칙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/ 생활지원비 등 미지원
- 자가격리 중인 사람은 가능하면 다른 사람과 별도의 화장실을 사용, 분비물 및 배설물 등을 철저히 관리, 화장실 및 오염된 물품은 소독

○ (격리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) 출근등교 포함 외출 가능하나, KF94(또는 이와 동급) 마스크 상시 착용,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(다중이용시설, 감염취약시설 등) 이용(방문) 제한 및 사적모임 자제

○ (공동격리) 격리자가 중증장애인, 영유아·아동(만11세 이하 또는 초등학생 이하) 등인 경우로 격리자를 돌보기 위한 목적으로, 함께 거주하는 사람 등과 공동 격리할 수 있음

* 다만, 격리대상자가 현실적으로 혼자 생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지자체가 판단하는 경우

제한적으로 공동격리 가능

- * 돌봄을 위한 공동격리자는 1인을 원칙으로 하되, 불가피한 사유에 한해 2인까지 인정
- (격리장소 외부인 방문) 원칙적으로 자가격리 장소에 외부인의 방문은 금지함
 - 다만, 난방·가스·수도 등 설비의 긴급수리, 위급상황 또는 일정 변경이 어려운 공적 사무 수행 등의 경우 격리통지 담당자에게 사전 보고 후 제한적으로 외부인 방문 허용
 - 출입자는 방역수칙*을 준수하여 최단시간 내 방문목적 달성 후 귀가
- * 적정 거리두기(방문 중 별도공간 대기 등), 마스크 착용(KF94 이상), 집안 환기·소독 등

라. 일시 외출

- (허용 외출) 해외입국자, 공동격리자, 감염취약시설 접촉자 등 비확진 자가격리자에 한하여 필수적 목적*의 경우 자가검진키트 검사결과 음성인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 외출이 허용되나 이 경우에도 비대면 진료, 온라인 구매 등 우선 활용(확진자는 진료목적 외에 외출 금지)
 - * 병·의원 방문, 코로나19 예방접종, 의약품 구매·수령, 식료품 구매, 자가검진키트 구매(최초 외출에 한함) 등의 경우 외출 후 2시간 이내 복귀
 - * 임종, 장례 참석의 경우 외출 후 24시간 이내 복귀([장례참석의 경우 인도적 사유에 따른 자가격리 일시해제 신청](#))

▶ 본인의 배우자,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,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(재혼, 부모 포함) 및 직계비속(사위, 며느리 포함)의 임종 및 장례에 한함

- (시험응시, 투표) 확진자·격리자에 대한 시험응시 또는 투표 지침(문서)에 따라 조치
- (일반 진료) 「재택환자(확진자 및 공동격리자) 외래 대면 진료체계」적용
 - * 진료의 시급성 또는 대면진료 필요성이 높은 경우 외에는 기급적 비대면 진료를 이용하거나 격리기간 이후로 진료 연기

마. 인도적 사유에 따른 자가격리 일시해제

- (대상) 해외입국자, 공동격리자, 감염취약시설 접촉자 등 비확진 자가격리자

▶ 자가격리중인 사람이 해당 보건소에 격리해제를 신청하면(신청서 작성), 장례기간 중 일시적으로 자가격리 해제를 허가함(해제서 발부)



[서식 21] 장례참석에 따른 일시적 격리해제 신청서

[서식 22] 장례참석에 따른 일시적 격리해제서

▶ 장례식 참석을 목적으로 입국한 자가격리 면제대상자와 동일한 대상에 대해 장례식▶(발인, 삼우제 등 포함)참석 가능

▶ 본인의 배우자 장례,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장례,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(재혼, 부모 포함) 및 직계비속(사위, 며느리 포함)의 장례

▶ (적용제외) 확진되어 자가격리 중인 사람은 인도적 사유에 따른 자가격리 일시해제 제도 미적용

바. 해외입국 자가격리자 중도 출국

- 자가격리자가 다음에 해당할 경우 격리기간 중이라도 중도 출국을 제한적으로 허용

- ▶ (대상) 해외입국 자가격리자*

* 해외입국 후 자가격리 중 확진되어 별도의 격리명령이 통지된 경우에는 적용 제외

- ▶ (사유) 해당 지자체장이 공익적·인도주의적 사유(임종·장례식) 등으로 승인한 경우

- ▶ (요건) 진단검사 결과 음성인 자만 출국 가능, 공항 이동시 사설구급차 등 이용

- ▶ **담당** 공무원이 확인해야 하는 사항

- ① 중도출국 사유 근거자료 / ② 항공권

- 항공기 탑승 24시간 전까지 중도출입국자 명단을 출입국사무소에 통보

- 법무부 인천공항 출입국·외국인청에 연락(032-740-7248/7284)

사. 자가격리 기간 및 격리해제

- (격리기간) ① 확진자의 경우 검체 채취일로부터 기산하여 7일이 되는 날 자정(24:00)까지를 격리기간으로 하되, 격리시작일은 격리통지일을 원칙으로 함

- ② 감염취약시설 3종 접촉자의 경우 확진자와 접촉한 날로부터 7일이 되는 날 자정(24:00)까지를 격리기간으로 함

- ③ 해외입국자의 경우 입국한 날로부터 7일이 되는 날 자정(24:00)까지를 격리기간으로 함

- ※ 기타 사유로 자가격리기간을 별도로 정한 경우 입원·격리통지서에 명시한 기간을 격리기간으로 봄

- ※ 격리시설에서 격리한 경우 퇴소절차 등을 고려 실제 해제시간 조정운영 가능

- (격리통지서) 법정격리통지서에는 실제 격리기간을 기재 상 격리기간은 격리시작일부터 해제일까지를 기재하되, 격리시작일은 격리통지일(문자통지일 포함)을 원칙*으로 함

- ▶ (예시) 확진자 (검체채취일 2.9일, 양성확인 2.10일, 격리통보 2.11일)

- ~~확진자 법정격리통지서 상의 격리기간 : 2.11~2.15. 24시(즉, 2.16일 0시)~~

- * 다만, 행정기관 및 관련 시스템의 사정 등으로 양성확인에 따른 격리통지(문자통지 포함)가 지연된 경우 양성확인일을 격리시작일로 하여 통지할 수 있음

- ~~* 격리해제 후 재검출 또는 단순재검출 사례에 해당하는 경우는 격리대상이 아니므로 격리통지 및 격리통지서 발급 불가~~

- (격리자 검사)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없더라도 공동격리자, 감염취약시설 접촉자 등 비 확진 자가격리자는 격리기간 중 2회 검사를 받아야 함

- (1차) ~~격리통보를 받은 날~~가구내 확진자 검체채취일로부터 3일 이내(감염취약시설 접촉자는 접촉자 분류시) PCR검사, (2차 격리해제전 검사) 격리 6~7일차 되는 날 신속

항원검사(RAT) 또는 PCR검사(감염취약시설 접촉자의 경우)

- (격리해제) 6~7일차 격리해제전 ~~신속항원~~검사 결과 음성이 확인 된 경우 7일이 되는 날 자정(24:00)에 격리해제(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도 격리해제 적용)
 - ~~동기인(2명 이상) 중 확진자 발생 시 확진자만 검체 채취일로부터 격리기간(7일)이 연장되고 나머지 동기인은 최초 격리기간 유지 후 해제~~